안세재경저널 회원용 · 2022년 7월 20일(수) · 주간 제29호 · 통권 제1580호 · 7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홈택스로 「구독료 월 30000원」

상장사 · 중소기업의 투명회계·적법세금·성공경영 정보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공인회계사 조세저널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경영박사

중기업 경영관리 외주화

2022/ 7/ 20 통권 1580호

CEO·CFO·COO·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자용 名品주간지

CEO 에세이 – 이해익원장

CEO는 사람을 경영한다(2)

퇴직소득 원천징수

경영관리임직원 재경컨설팅 제안

- 박윤종 회계사 :
법인간 합병시 중요절차 및 세무상 쟁점

CFO·회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자금거래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는 이자징수명세서 등이 지출증빙임
- 7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쉽고 편리한 홈택스로
- 퇴직소득 원천징수
- 퇴직연금제도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도입됩니다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섹션

- 비영리법인이어도 축산업 영위부분은 수익사업임 (p.12)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經營 戰略

〈기업주식 상속·증여·양도 위한 가치평가(자산가치와 수익가치 혼합 적용)〉

평가방법	적용조건, 구체적 계산방법 등
상대가치평가방법(시장접근법)	제품 · 업종, 자산규모 · 매출, 이익율 등 경제적 특성이 유사한 상장기업의 실제 주가배수로 평가함(계산가액 = 주당이익 × 유사기업 PER 평균)
미래현금흐름할인(이익접근법)	미래기간(약 5~10년)의 현금흐름추정액을 업종적합할인율(가중평균자본비용)로 현가할인하여 합산
상장주식가격	상장주식 등은 평가기준일(=거래일) 전후 2개월의 최종시세(종가) 평균가액으로 계산함
자산가치 40% + 수익가치 60%	일반적인 비상장법인 : 주당 순손익가치 = 3년 평균 순손익 ÷ 연간 10%(평균기대수익율) 주당 순자산가치 =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자산가치 60% + 수익가치 40%	부동산 과다보유법인(부동산 등이 법인자산총액의 50% 이상으로서, 법인지분 50% 초과 소유하는 과점주주인 거래임)
자산가치로 평가(자산접근법)	법인 자산 중 부동산 등이 80% 이상인 법인(골프장, 부동산 임대법인 등) 법인자산 중 주식과 부동산 등 보유액 80% 이상, 사업개시 3년 미만, 휴 · 폐업법인, 청산진행, 사업자 사망 등
주당순손익가중평균액 계산법	(직전연도 주당순손익 × 3 + 2년전 주당순손익 × 2 + 3년전 주당순손익 × 1) ÷ 6

(안세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제공)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 · 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타

안건조세정보 02-829-7575

주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580호 / 주간 29호 2022. 7. 20. (수)

· 발 행 인 : 이 윤 선
· 제 작 : ㈜ 안건조세정보
· 대표전화 : 02) 829-7575
FAX : 02) 718-8565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 02) 829 - 7575
팩스 : 02) 718 - 8565
• 부산·경남
전화 : 051) 642 - 3988
팩스 : 051) 642 - 3989
• 대구·경북
전화 : 053) 654 - 9761
팩스 : 053) 627 - 1630
• 대전·충청
전화 : 010) 3409 - 2427
팩스 : 042) 526 - 1686
• 수원·안산
전화 : 010) 5255 - 6116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 - 198993 - 13 - 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eAnSe.com의 차별화 특장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④ 즉답(010-2672-2250)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⑧ CEO·CFO 경영에세이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목 차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기업주식 상속 · 증여 · 양도 위한 가치평가(자산가치와 수익가치 혼합 적용)	표지
긴 급 시 사 해 설	법인간 합병시 중요절차 및 세무상 쟁점	2
C E O 에 세 이	CEO는 사람을 경영한다(2)	3
세무·회계상담자문 (남들은 무슨 고민할까?)	- 전자문서로 전표 및 증빙 보관처리 중 반드시 원본으로 보관해야 하는 경우	5
	- 재화의 납품은 국내 업체로 하나 대금은 해외법인에서 수금하는 거래의 경우	
	- 무역조건에 따른 매출액 인식	6
눈 에 맞 는 절 세 미 인	자금거래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는 이자징수명세서 등이 지출증빙임	7
매 일 절 세 재 무 요 점	-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부가세 환급금 지급 지원 대상	9
	- 소득세율 개정 신·구 조문 대비표	10
직 장 인 S u r v i v a l	사람, 일, 돈을 끌어당기는 자기소개법	11
최 신 판 례 예 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비영리내국법인이 영위하는 축산업은 「법인세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법규법인-6718, 2022.01.20)	12
	- 비영리법인이 외국인학교의 운영자에게 외국인 교사가 거주하는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법규법인-1137, 2022.01.17)	13
세 정 뉴 스 와 해 설	국세청, 불성실 부가세신고시 '사후검증'으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14
마케팅 Tax consulting	비영리법인이어도 축산업 영위부분은 수익사업임	12
세 무 정 보	- 7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쉽고 편리한 홈택스로	15
	- 퇴직소득 원천징수	30
경 영 정 보	- 퇴직연금제도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도입됩니다	45
세 무 환 율 정 보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44

법인간 합병시 중요절차 및 세무상 쟁점

박윤종 공인회계사 (안세회계법인)
- (전)한국외대 경영대학 겸임교수, (전)국민대 경영대 겸임교수
- 공인회계사·경영학박사(마케팅조세전략, 회계경영학원론)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와 서울대 경영대학원 졸업
- 다수우량기업 회계자문(SK증권, 지오다노, 동서그룹 등)

가업승계 · 증여 · 상속자문
기업경영권
양도 · 양수 컨설팅
(829-7575)

개념, 중점	내용, 절차, 계산방법
적격합병여부	① 1년 이상 영위하던 내국법인간 합병 ② 피합병법인 주주의 대가 중 80% 이상을 주식으로 교부 ③ 피합병법인의 사업승계 ④ 피합병법인의 종업원 80% 이상 승계 등
흡수합병 개념	상법절차에 따른 일반적 합병(피합병법인 소멸 : 자산과 계약, 인력 포괄이전)
포괄양수도	특정회사 인적 · 물적자원의 포괄적 양수도(양도법인은 소멸안됨)
합병계약서	계약서 작성 후 양법인의 이사회와 주주총회 승인 + 채권자 보호절차
합병비율 결정	2개 법인의 기준주가(시장 주가평균) 또는 순자산(40%) + 수익가치(60%) 또는 현재 및 미래의 본질가치 반영하여 주당가치 계산 → 합병비율 계산 (주주간에 영향, 양회사 채권자, 특수관계자에 많은 영향, 불공정합병 주의)
합병관련 세금	소멸법인의 일반 법인세와 부동산 양도이익법인세 정산,주주의 간주배당소득세, 합병으로 이전되는 주식의 증권거래세, 합병법인의 실물자산(토지 · 건물 등) 취득세 등, 감면여부 판단 · 적용
적격합병의 법인세	적격합병요건 3년 유지시 과세이연혜택 적용 → 아니면 과세 + 이월결손금 인정 안 됨
세금혜택의 종류	과세이연(법인세와 배당소득세), 증권거래세는 면제, 이월결손금 인정 혜택, 세액공제 연결 여부, 기타세액공제 등

CEO는 사람을 경영한다(2)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회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경영컨설턴트는 직업상 CEO들과 개별적으로 다양하게 속 깊은 경영상의 이야기를 나눈다.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경영전문가라는 점에서 공인 회계사와 같다. 하지만 공인회계사의 작업은 결과적이고 정태적이다. 반면에 경영컨설턴트는 과정을 함께 하고 동태적이다. 금융전문가는 주로 재무적 성과를 중시한다. 하지만 경영컨설턴트의 관심사는 경영전반에 미친다. 물론 경영컨설턴트 개개인은 높은 수준의 전문분야에 있어 각양각색이다.

여하간 경영컨설턴트는 증자를 할 것인지 또는 차입으로 할 것인지 이른바 자금 동원전략에서부터 판매유통경로에 이르기까지 경영자들의 다양한 속사정과 경영전략을 경청하며 문답한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돕는다. 그 중에서도 제일 비중 있고 결정적인 것이 사람문제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걸 맞는 사람 충원과 배치가 CEO 의 최대관심사다. 그야말로 기업(企業)이란 사람을 위한 사람에 의한 사람의 결합체라고 할 수 있다. 기(企)란 한문도 풀어 쓰면 사람(人)이 머무는(止)곳이 아닌가.

company나 corporation의 com과 co도 사람과 함께 한다는 뜻이다. 그런 맥락에서 한문과 신기하게 통한다.

기업은 사람과 함께 한다

현대적 의미의 기업이 서양의 산물이라고 할 때 한문도 기막히게 잘된 작명 또는 번역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기업이란 우선 주주와 함께 한다. 또 고객과 함께 해야 하고 협력회사 파트너와 함께 한다. 그리고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CEO는 임직원이란 '사람'과 함께 한다. 그러나 현실은 영 딴판일 경우가 허다하다. 사람보다 노예를 선호하는 CEO가 의외로 많다.

변변한 중역하나 없어 자기 혼자 고생만 한다는 푸념을 순진하게 해석한 후 훌륭한 인재를 소개해 준 경험이 많았다. 그런데 번번이 이 핑계 저 핑계로 퇴짜를 맞았다. 그런 CEO들에게는 능력 있고 경우 바른 중역이 거북한 것을 깨달았다.

짓밟고 모멸감을 주어도 꼬리 내리고 구박을 받아들이는 임직원, '노예'를 질타하는 그 맛에 사는 용렬한 CEO인 것이다. 당연히 그런 기업이 번창할 리 없다. 그런 기업은 하루 빨리 망하도록 돕는 게(?) 현명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파트너와 함께 해야 성공

진정한 리더는 노예가 아닌 훌륭한 이인자, 파트너와 함께 한다. 그런 기업이 당연히 성공한다. 그런데 현실은 그런 리더가 소수다. 그래서 성공하는 기업과 조직이 소수인 모양이다.

중국 한나라 고조 유방은 자기보다 훌륭한 이인자들 장량, 한신, 소하를 두어 천하를 얻는데 성공했다. 조선왕조의 태조 이성계도 퉁두란이라는 파트너를 만나 성공의 기틀을 잡았다. 미국 대기업 중역출신 데이빗 히넌 교수와 경영컨설턴트 워렌 베니스도 지적했다. 일인자보다 이인자, 파트너들이 결코 능력이 부족하지 않다. 자발적이고 전문적이며 뛰어난 능력 면에서 오히려 일인자를 능가했던 이들도 많다. 가령 빌 게이츠를 충실하게 보좌했던 스티브 발머가 그렇다. 또 중국 혁명의 지도자 마오쩌둥을 위해 미련 없이 선배서열이면서도 주연자리를 내 준 저우언라이도 훌륭한 인물이다. 지식인 저우언라이는 탁월한 식견으로 국내외 문제를 슬기롭게 대처하는 능력이 있었다. 영어, 러시아어, 프랑스어와 일본어에도 능통했으며 시대를 조망하는데도 뛰어났다. 역사적으로 또 현대에서도 천재들은 매우 협조적인 인물들이다. 요컨대 '우리는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파트너와는 할 수 있다'는 사실을 CEO는 현실로 구현해내는 리더다.

전자문서로 전표 및 증빙 보관처리 중 반드시 원본으로 보관해야 하는 경우

Q 당사는 현재 회계전표 작성부터 해당 증빙 등을 전자로 보관 중입니다.
법에 따라, 작성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는 장부와 서류는 그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는 원본을 보존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자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가능한 경우, 원본 또한 전자문서일 경우 전자 보관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실제 날인하거나 서명하는 계약서, 인감대장 등 외에
반드시 원본을 보관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는지, 현업에서 놓치기 쉬운 경우는 어떤 것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A 최초부터 전산조직으로 작성되는 장부나 증빙서류는 전자장부나 증빙이 원본으로 인정되지만, 원본이 종이서류 등으로 작성된 이후 이를 스캔등으로 전자적으로 변환하는 경우는 종이원본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다음의 국세기본법 통칙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국세기본법 통칙 85의3-0…1(전자기록 등에 의한 장부 등의 보존)
법 제8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영 제65조의7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는 다음의 경우 실물을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1. 당초부터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생산한 경우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보관하는 경우

재화의 납품은 국내 업체로 하나 대금은 해외법인에서 수금하는 거래의 경우

Q 해외법인 B가 당사로 직접 발주를하고, 대금 또한 해외법인 B로부터 수금하는 거래이나,
B 법인으로 직수출 하지 않고, 당사의 재화를 국내업체 A에 납품하여 A업체가 B법인으로 수출하였습니다.(재화의 흐름 : 당사 > A업체 > B법인)
이 과정에서 A업체와 당사와의 수수료 등 금전 거래는 없으며, 납품에 대한 증빙만 구비한

상황입니다.
질문1. 이러한 거래의 경우 공급시기가 언제가 될까요?
해외법인 B와의 결제대금이 US달러로 거래되기때문에, 어느 시점의 환율을 사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부가세 신고 시 해외법인 B와의 발주서와 외화입금 증명서 제출로 문제 없을까요?
질문3. 해당 거래는 전년도 발생한 매출 누락 건으로 당월 회계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느 시점의 환율을 적용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A

1. 귀사가 직수출하지 않고 A업체에게 공급하는 사유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어렵습니다. 해외법인 B와 수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상 수출물품을 국내의 A에게 공급하라고 지정한 경우라면 A에게 공급하는 시점이 공급시기이며 해당일의 환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2. 해외업체 A가 B에게 공급하라고 지정한 경우 수출계약서, 외화입금증명서 등이 영세율입증사본으로 인정됩니다.
3. 회계는 거래시점의 거래내역을 작성하는 것으로 작년 거래를 올해에 임의대로 처리하는 것은 올바른 처리방법이 아니므로 당연히 이런 거래에 대한 환율적용시점 등의 규정은 없습니다.

무역조건에 따른 매출액 인식

Q

당사는 기존에는 수출제품에 대해 선적일자 기준으로 매출액을 인식하고 부가세 신고까지 진행을 하였으나, 근래 회계감사 이슈 사항으로 수출 무역조건에서 FCA 조건(수입자가 지정하는 운송업체의 운송 차량에 상차까지)인 경우 상차일의 서울외국환중개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인식하면 되는데, 문제는 부가세 신고시(당사는 매월 조기환급 신고) 선적일 환율과 상차일의 환율 차이는 매출액/매출채권 가감하여 기표하여 처리하면 될런지요?

A

수익인식은 회계기준대로 하여야 하므로 상차일의 환율을 적용한 금액이 수익이 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과세표준은 선적일기준이므로 선적일의 환율을 적용한 금액을 부가가치세액 신고를 위한 신고서상 금액으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즉, 실제 수익과 별개로 부가가치세 서식 작성시에는 부가가치세법 따른 선적일환율 과세표준을 적용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자금거래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는 이자징수명세서 등이 지출증빙임

상담실 백종훈 차장

법인은 지출하는 모든 비용에 대해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을 입수하여야 하며, 특히 3만원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서는 계산서 · 세금계산서 · 신용카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등의 법정증빙영수증을 입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회사가 설비확충이나 운영을 위해 금융기관이나 또는 다른 기업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해당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지출과 관련된 증빙을 입수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금융기관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자징수명세서 등이 지출증빙임

이자를 지급하는 거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가 아니므로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이때에는 이자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였다는 표시인 원천징수영수증이 증빙이 된다.

하지만 은행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뒤 지급하는 이자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의무가 없으므로, 은행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뒤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이자액의 전액을 지급하게 되므로 원천징수영수증도 구비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금융기관 등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출거래장상의 이자납부내역 또는 은행의 이자징수명세서 등을 지출증빙으로 첨부하여 처리하면 된다.

그러나 금융기관이더라도 영업인가가 취소되거나 파산으로 인해 설립된 파산재단은 법인세법상의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 법인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반드시 하여야 하고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증빙을 하여야 한다.

♣ 서일-872, 2007.06.25

영업인가가 취소되었거나 파산으로 설립된 파산재단은 "「법인세법 시행령」(2002.12.30. 대통

령령 제17826호로 개정 후의 것)" 제111조 제2항에 규정된 금융보험업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파산재단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파산재단을 법인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국내의 금융기관이 아닌 해외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뒤 지급하게 되는 이자비용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이자를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따라서 해당 해외국가와의 조세조약이나 국내세법(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고,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을 지출증빙으로 처리하면 된다.

♣ 서이46017-11558(2002.8.23.)
내국법인이 일본은행(일본의 중앙은행 및 일본정부 · 중앙은행 또는 양자에 의하여 전적으로 소유되는 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않음) 본점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이에 대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동 일본은행 국내지점이 당해 차입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우 동 일본은행 본점이 수취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한 · 일조세협약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총액의 10%(주민세 포함)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타인이나 관계사 등에서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하는 이자비용에 대하여 비용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의하여 적정한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또한 반드시 원천징수를 해야 비용(=손금)인정이 가능하다.

이때의 지급이자는 거래 상대방이 금융업을 주업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원천징수세율 25%를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한다.

따라서 해당 증빙으로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나 차용증 및 보통예금 통장사본 등을 비치하고 이자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관하면 된다.

365 매일절세재무요점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月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부가세 환급금 지급 지원 대상

중소영세	① 매출액 1,000억원 이하 &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②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
혁신지원	③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 · 표창 수상자(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 ④ 스타트업기업, 혁신중소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일자리창출중소기업, 유턴기업 ⑤ 신산업 성장지원 중소기업(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⑥ 한국판 뉴딜 관련기업
피해기업	⑦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⑧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및 직접피해 사업자 ⑨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火 단독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 요건

양도방식	비과세 혜택
수용	토지와 건물이 시차(5년 내)를 두고 수용되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이 토지에도 적용
경매	토지와 건물이 시차를 두고 따로 매각되면 토지에 비과세 적용 안 됨

소득세율 개정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율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만원 + (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1,400만원 초과 5,400만원 이하	84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2만원 + (4,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5,4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684만원 + (5,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90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1억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788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60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38%)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538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6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238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억7,460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억7238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
10억원 초과	3억8,460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10억원 초과	3억8238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연금계좌 및 irp 세제혜택

총급여(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 납입한도	세액공제율	최대 세액공제 금액
5,500만원 이하	400만원	16.50%	66만원
5,500만원 초과~ 1억2,000만원 이하	400만원	13.20%	52만8000원
1억2000만원 초과	300만원	13.20%	39만6000원

사람, 일, 돈을 끌어당기는 자기소개법

'자기소개'의 목적이 뭘까요?
자기소개는 내가 살아온 스토리를 주절주절 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듣는 이의 관심을 끌고, 이들이 날 선택하게 할 기회의 자리죠.
여컨대 지금부터 나는 금융회사 취업 면접을 본다고 상상해 보세요.
"저는 부산에서 자라 서울로 상경해 OO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어떤가요? 면접관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연히 부산 출신의 면접관이 있어서 나의 출신지에 대한 흥미를 느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금융회사가 관심을 보일 자기PR의 기회는 놓치고 말았죠.
다시 면접실로 돌아가 보죠.
"월급 100만 원으로도 10년만에 1억 원의 연금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자산관리 전문가 ooo입니다."
"저는 대학생 시절 월급 100만원 알바를 해서, 1년 뒤에 1,000만원을 모은 경험이 있습니다."
"소액 저축으로 목돈 마련의 꿈을 이루려 한다면 저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어떤가요? 이런 자기소개를 하는 인재라면 당장이라도 채용하고 싶지 않은가요?
이렇듯 자기소개는 내가 살아온 이야기가 아닌, '나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여야 합니다.
듣는 이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하고, 실현 가능한 확신을 부여할 수 있다면, 내 자기소개는 '성공'입니다.

첫번째 : '내가 제공할 미래'
상대방이 기대할 수 있는 구체적 미래를 그려 보세요.
두번째 : '실적'
내가 실현할 미래와 관련해서 내가 이뤄낸 과거 실적을 알리세요.
마지막 : '듣는 이가 취할 행동'
내가 듣는 이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청자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자신'을 소개하고, 청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은 '미래'를 소개합니다."

최 신 판 례 예 규

Marketing Tax consulting

비영리법인이어도 축산업 영위부분은 수익사업임

비영리내국법인이 영위하는 축산업은 「법인세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법규법인-6718, 2022.01.20

▌질 의

- 비영리내국법인이 영위하는 축산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신

비영리내국법인이 영위하는 축산업은 「법인세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업자(B)가 신청법인(A)이 생산한 △△△ 제품을 매입하기로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해당 제품을 매입하고, B의 거래처에 해당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매입 및 공급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발급하는 것임

사전법령부가-1679, 2021.12.30

▌질 의

- 사업자(B)가 다른 사업자(A)가 생산한 제품을 매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해당 제품을 매입하여 거래처에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 각각을 독립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위탁판매하는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여부

▌회 신

석유화학제품을 제조 · 판매하는 사업자(이하 "갑법인")가 다른사업자(이하 "신청법인")가 생산하는 △△△ 제품(이하 "제품")을 매입하기로 하는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제품을 매입하고, 갑법인의 거래처에 해당 제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공급에 대하여 신청법인 및 갑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가업상속에 해당되는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 주식 중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도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임(2022.01.05.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

사전법규재산-84, 2022.01.12

▌질 의

- 상속인은 2020.10.10. 피상속인(상속인의 父)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이하 "쟁점법인") 주식을 상속받고,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검토중임
- 피상속인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등으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쟁점법인 지분의 5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함
- 상속인이 상속받은 쟁점법인 주식 중 대부분은 유상증자 및 유상감자 등으로 피상속인이 10년 미만 보유함

* 기타 다른 가업상속공제 요건은 모두 갖춘 것으로 전제함

질의

•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 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아래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 2022.01.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 2022.01.05.

[질의1] 가업상속에 해당되는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 주식 중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만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1안) 해당법인 주식 중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만 적용됨

(2안) 해당법인 주식 중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도 적용됨

[질의2] [질의1]이 (2안)인 경우 변경된 세법해석 적용 시기

(1안) 예규 생산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2안) 예규 생산일 이후 결정 · 경정분부터 적용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1은 2안, 질의2는 2안이 타당합니다.

비영리법인이 외국인학교의 운영자에게 외국인 교사가 거주하는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법규법인-1137, 2022.01.17

▌질 의

• 질의법인은 「민법」제32조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시행규칙」에 따라 20**년 *월 **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며

- 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을 통한 교육사업 등을 추진하여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외국인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함께 외국인 투자유치에 기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정관상 목적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정관 제4조 [사업]

재단은 제2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외국인학교의 신축, 증축, 시설의 유지관리 및 외국인 교육환경의 개선 등
2. 외국인학교의 경영(운영학교를 두고 학교운영에 관한 정책결정 및 감독의 경우를 포함)
3. 기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사업

• 질의법인은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국제학교(이하 '학교')의 학교부지 및 시설물 건축, 임대차 운영 및 학교 경영과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 '20.6월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 소속 외국인 교사를 위한 사택(이하 '쟁점사택')을 신축하여 학교에 무상임대*하고 있음

*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및 월 관리유지비없이 무상임대

질의

• 비영리내국법인이 외국인 교사를 위해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제공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신

비영리법인(사립학교의 신축 · 증축, 시설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한한다)이 외국인학교의 운영자에게 외국인 교사가 거주하는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세청, 불성실 부가세신고시 '사후검증'으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국세청은 이달 부가세 확정신고를 마치고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소송비용을 사업장 관련 매입세액으로 잘못 신고해 부당하게 세액공제를 받은 사례 등에 대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낚시어선 운영업을 하는 사업자가 낚시인들로부터 현금으로 승선비를 지급 받으면서 부가가시세 매출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 대해서도 면밀히 가려내기로 했다.

'부당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반복적 탈루유형이나 비정상적혐의 거래 등을 중점적으로 검증해 반드시 탈루세금을 추징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부가세 신고 이후에 철저히 검증하고 만약 성실하지 못한 경우, 세무조사에 착수한다는 복안이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향후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을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신고내용확인과 세무조사의 연계를 강화해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 철저히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15년만에 소득세 '들썩'… 소득 상위 10% 감세 추진되나

정부가 오는 21일 세법개정안에 소득세 인하안을 넣을 것이란 관측이 계속되고 있다.

중산층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인데 여당에서도 관련 법안을 발의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일 기재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고물가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과 서민층에 대한 세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라"라고 말했다.

여당에서도 이날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 명의로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재는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로 되어 있는 소득세 구간을 1400만원 이하 6%, 5400만원 이하 15%, 1억원 이하 24%로 변경하는 것이다. 그 이상 상위구간에 속하는 초고득자 세금은 손대지 않기로 했다.

전경련이나 경총 등 경제단체들에서는 물가에 연동해 매년 소득세를 내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소득세를 물가연동해 매년 인하하면 기업의 연봉 인상을 억누를 수 있기 때문이다.

새정부 첫 세법개정안 21일 나온다… 경제규제 완화안도 곧 발표

정부가 이달 21일 윤석열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다. 경제 활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규제 완화안도 이달 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직전 문재인 정부에서 올린 것을 5년 만에 원상 복귀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4단계로 나뉘어 있는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도 3개 이하로 줄이면서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의 세 부담을 함께 낮춘다.

대표적인 '페널티 과세'로 거론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투상세)도 폐지한다. 투상세는 기업이 소득 중 일정액을 투자·임금 증가·상생 협력 등에 쓰지 않을 경우 미달액(미환류소득)의 20%를 법인세로 추가 과세하는 제도인데, 실제 정책 효과는 크지 않으면서 기업의 부담만 키운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와 함께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이중과세 문제가 지적된 배당소득 과세 제도는 국제 기준에 맞춰 개편한다.

기재부는 "세제의 합리적 재편으로 민간의 경제 활력을 높이는 한편, 세 부담 적정화·정상화를 통해 민생 안정과 국민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경제 규제 완화안도 이달 중 내놓을 계획이다. 추부총리는 "규제혁신을 범정부 어젠다로 격상하고, 이달 중 민관합동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모든 핵심 규제가 철폐될 때까지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7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쉽고 편리한 홈택스로

– 국세청, 2022. 6

□ (신고개요)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13만 명*은 7월 25일(월)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여야 합니다.

* 개인 일반과세자 496만 명, 법인사업자 117만 개

○ 또한, 세법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도 신고의무가 신설되어 7월 25일(월)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여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는 고지된 세액을 7월 25일(월)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 (세정지원)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등의 신속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41만명)에 대해 납부기한을 2개월(9.30.까지) 직권 연장하고, 그 밖에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승인하겠습니다.

□ (신고편의) 올해부터 판매 · 결제대행 매출자료의 수집기한을 단축하여 미리채움 서비스로 추가 제공하고, 모바일(손택스) 간편신고 대상을 모든 사업자로 확대하여 지원합니다.

□ (신고도움)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112만 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홈택스「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안내자료를 제공합니다.

□ (신고검증)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니 성실한 신고를 당부드립니다.

1 '2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는 7월 25일까지

□ (신고개요) 7월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 납부의 달로서,

○ 개인 일반과세자, 법인사업자는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7월 25일(월)까지 신고 ·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번 신고 대상자는 613만 명(개인 일반 496만, 법인 117만)으로, 2021년 1기 확정신고(592만 명) 때보다 21만 명 증가하였습니다.

○ 또한, 세법개정에 따라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으며, 예정부과기간(1.1. ~ 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7월 25일(월)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 과세기간 |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22. 1. 1. ~ '22. 6. 30.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	'22. 1. 1. ~ '22. 6. 30.
법인사업자	예정고지 대상*	'22. 1. 1. ~ '22. 6. 30.
	예정고지 미대상	'22. 4. 1. ~ '22. 6. 30.

*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부가법 제48조제3항)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21. 1. 1. ~ 12. 31.)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50만 원 미만 제외)을 7월 25일(월)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총 29종)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이용시간을 종전 24시에서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연장 운영*하여 신고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신고 마감일인 7.25.(월)은 24시까지 운영함에 유의)

* 7. 1. (금) ~ 7. 24. (일) ⇒ 매일 06:00 ~ 다음날 새벽 1시까지 (1시간 연장)

□ (전자납부)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코로나19 피해 사업자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 실시

1 개인사업자 납부기한 연장 세정지원

□ (납부기한 연장) 코로나19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 (직권 연장)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등 방역조치*로 매출액이 감소한 개인사업자의 납부기한을 2개월(9.30.까지) 직권 연장합니다.

* '22.4.17.까지 영업시간 제한, 인원제한 등 조치가 유지, 4.18.부터 해제

| 세정지원 대상(납부기한 직권 연장) |

◆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액이 감소한 개인사업자(41만 명)

☞ '21.10.8. 시행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22.1분기 손실보상 지원 대상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수보)

–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으로 신고는 7월 25일(월)까지 해야 하며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별도 안내문(모바일)을 발송(7.11.)합니다.

○ (신청 연장) 그 밖에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서 연장을 적극 승인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 (신청방법)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온라인* 또는 우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여 검색창에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검색하여 신청

<온라인 화면 접속 경로>

· 홈택스 : ① 홈택스 접속 > ② 신청/제출 > ③ 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 ④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 손택스 : ① 손택스 접속 > ② 신청/제출 > ③ 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④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2 중소기업·코로나19 피해 기업 등에 환급금 조기지급 실시

□ (환급금 조기지급)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원활히 하고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혁신기업, 재해·재난 피해기업 등을 대상으로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

중소 영세	① 매출액 1,000억 원 이하 &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② 매출액 10억 원 이하 영세사업자
혁신 지원	③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 (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 ④ 스타트업기업, 혁신중소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일자리창출중소기업, 유턴기업 ⑤ 신산업 성장지원 중소기업(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⑥ 한국판 뉴딜 관련기업
피해 기업	⑦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⑧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및 직접 피해 사업자 ⑨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 (조기환급) 지원대상 중소기업·모범납세자 등이 7월 20일(수)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하여 7월 29일(금)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 법정지급기한인 '22. 8. 9. 보다 11일 앞당겨 지급

○ (일반환급) 영세사업자(직전년 매출액 10억 원 이하) 및 매출액 급감(직전기 대비 30% 이상) 사업자가 일반환급 신고 시,

–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환급금을 법정지급기한(30일 이내)보다 12일 앞당겨 8월 12일(금)까지 지급하겠습니다.

3 비대면 신고서비스 확충을 통한 신고편의 제고

□ (미리채움 추가) 판매·결제대행 업체들이 분기별로 제출하는 매출자료를 홈택스를 통한 미리채움 서비스로 추가 제공합니다.

○ 세법개정에 따라 자료수집 기한을 단축*하여 올해부터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7.15.까지 수집하여 7.17.부터 제공), 판매 · 결제대행 매출이 있는 사업자는 7월 17일 이후 홈택스에서 편리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종전)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말일 → ('22년)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15일

□ (모바일 신고 확대) 영세율 매출이 있는 사업자는 모바일 신고가 불가능했으나, 복잡한 영세율 관련 서식*도 모바일로 추가 개발하여 모든 사업자가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 영세율 매출명세서, 수출실적명세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명세서

□ (숏폼 영상으로 신고방법 안내) 납세자가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방법을 안내하는 맞춤형 숏폼 영상(1~2분 가량의 짧은 영상) 12개를 제작하여 홈택스, 국세청 누리집, 유튜브, 틱톡 등에 게시하였습니다.

○ 또한, 신고서 작성화면에서 납세자가 필요로 하는 영상을 즉시 열람할 수 있도록 바로가기에 '숏폼 영상' 메뉴를 추가하였습니다.

□ (임대업 신고 개편) 세무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가 부동산 임대 관련 매출액을 계산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부동산공급가액명세서부터 작성하고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화면 구성을 변경하였습니다.

○ 부동산공급가액명세서에서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입력하면 임대수입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되고, 해당 금액을 신고서에 동일하게 기재할 수 있으므로 더욱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기본정보 입력	⇨	부동산공급가액명세서	⇨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4 납세자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제공으로 성실신고 지원

□ (신고도움서비스) 사업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합니다.

* 개별분석자료, 기본사항, 과거신고내역, 세법개정, 세법해석사례, 대법원 주요 판례

□ (공통 도움자료) 모든 사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한 자료*와 동일업종 매출 · 매입 분석자료,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 최근 2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비중, 면세매출 비중 등

□ (개별 도움자료) 빅데이터, 외부기관 과세자료, 과세기반(세금계산서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등을 분석하여,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를 112만 명의 사업자에게 확대 제공*합니다.

* ('21년 1기 확정) 91종, 107만 명 → ('22년 1기 확정) 96종, 112만 명(4.7%↑)

| 업종별 주요 안내 항목(예시) |

공통	• 주요 세법개정사항 안내, 전년 대비 매출 증가 사업자 성실신고 안내
전문직	• 세무대리인 불복수임료 성실신고 안내, 의료기기 판매업 매출 분석 안내
부동산	• 임대업자 부당환급 혐의 분석 자료, 토지분 중개수수료 매입세액 불공제 안내
서비스	• 낚시어선 사업자 현금매출 신고 안내, 보트(크루즈) 등 사적 경비 매입세액 불공제 안내
건설업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료 관련 건설공사 자료, 소방시설공사 착공 내역 안내
도소매	• 재활용폐자원 부당공제 혐의분석 자료, 장애인보장구 보조금 관련 지급 자료

□ (조회방법) 홈택스 접속 시 알림창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으므로,

* (접근경로) [납세자용] 홈택스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세무대리인용] 홈택스 〉 세무대리인 〉 수임납세자 정보조회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 신고 전에 「신고도움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한 후, 도움자료를 반영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신고 후 검증 강화

□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 향후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특히, 신고내용확인과 세무조사의 연계를 강화하여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철저히 검증할 계획입니다.

| 신고내용확인 추징 주요 사례 |

1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소송비용을 사업장 관련 매입세액으로 잘못 신고하여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례
2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전문서비스 용역을 제공하면서 면세 상호주의 고려 없이 무조건 영세율 매출로 신고한 사례
3 낚시어선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낚시인들로부터 현금으로 승선비를 지급 받으면서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를 누락한 사례
4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비사업자에게 할인을 명목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하여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를 누락한 사례

□ 또한,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반복적 탈루 유형[1]이나 비정상적 혐의 거래[2] 등을 중점 검증하여 반드시 탈루 세금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1) 가공수출 혐의, 부실 거래처와의 거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누락 등
2) 전자세금계산서 수수 상황 분석을 통한 가공·허위 발행 혐의 등

□ 사업자분들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임을 인식하고 제공해 드린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참고자료

참고 1 - 부가가치세 제도 개요

1 계속사업자

○ 일반과세자(법인 · 개인일반 사업자)

– 일반적인 경우 법인*은 1년에 4회, 개인은 2회 신고

* 소규모 법인사업자(1억 5천만원 미만)는 '21년 4월부터 예정고지 제도 시행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4.1.~6.30.	7.1.~7.25.	법인사업자
		1.1.~6.30.	7.1.~7.25.	개인 일반사업자
제2기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0.1.~12.31.	다음해 1.1.~1.25.	법인사업자
		7.1.~12.31.	다음해 1.1.~1.25.	개인 일반사업자

–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 · 납부(4월, 10월 예정신고 의무 없음)

*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 제외

–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 예정신고 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예정고지세액은 결정취소

* 휴업 등으로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간이과세자

– (과세기간) 1.1. ~ 12.31.까지 1년

- (신고·납부 기간) 다음해 1.1. ~ 1.25.까지 신고·납부
-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부과세액(7월)으로 고지서에 의해 납부(고지세액 50만 원 미만, 유형전환자 제외)

*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는 1.1.~6.30. 기간의 실적을 7.25.까지 신고·납부

2 신규사업자
- (과세기간)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계속사업자와 동일

3 폐업자
- (과세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참고 2 -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방법 안내

1. 부가가치세 신고

구 분	주 요 내 용
전자신고 (PC)	◦ 대상자: 모든 사업자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회원 가입 - 처음 이용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회원가입 필요 · (개인) 공동·금융인증서(주민등록번호 발급), 본인명의 휴대전화, 본인명의 신용카드 번호 중 하나 선택 · (법인) 공동·금융인증서(사업자등록번호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중 하나 선택 ◦ 접근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회원 접속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메뉴 선택 또는 회원 접속 → 홈택스 내비게이션 → 신고서 작성 ◦ 이용시간: 7.1.~7.24. 매일 06:00~다음날 01:00 7.25.(신고마감일) 06:00~24:00 ※ (전자신고 장점)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매입 등 29가지 항목을 조회할 수 있음 ◦ 전자신고 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참조 ※ (매뉴얼)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 ※ (동영상)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동영상자료실

모바일 신 고 (스마트폰)	◦ 대상자: 무실적자 ◦ 접근방법: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 ※ 회원 접속 후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간편신고' 선택 ◦ 모바일 신고 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참조 ※ (매뉴얼)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 ※ (동영상)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동영상자료실
우편신고 · 방문신고	◦ 이용시간: 2022. 7. 25.(월) 18:00까지 ◦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

2. 부가가치세 납부

구 분	주요 내용
홈택스 (PC,모바일)	◦ 국세청 홈택스 납부(공동·금융인증서 접속)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자진납부'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 *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 ◦ 페이코, 앱카드*, 삼성·카카오·네이버페이 이용자는 간편결제로 납부 가능 * 6개 카드사(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 납부시간: 07:00 ~ 23:30(연중 무휴)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 카드로택스)	◦ 금융결제원 사이트 납부(www.giro.or.kr, www.cardrotax.kr) ◦ 공동·금융인증서로 접속 후 기본정보(납세자 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를 조회 또는 입력한 후 납부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 납부시간: 00:30 ~ 23:30(연중 무휴)
금융기관 (수납창구, CD/ATM, 인터넷뱅킹 등)	◦ (수납창구) 현금,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CD/ATM) 계좌이체, 신용카드(분할납부불가), 가상계좌 납부 ◦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ARS)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공과금수납기)* 계좌이체 납부 * 금융기관에서 공과금 납부 전용을 위해 설치된 단말기 ◦ 납부시간: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세무서 (무인수납 창구 등)	◦ (무인수납창구)* 신용카드 납부 * 신용카드수납기로 납세자가 직접 이용 ◦ (현금수납창구)* 현금 납부 * 수납집중기간(신고기간 종료 5일 전부터 종료일까지, 매월 말일) 등에만 운영

참고 3 - 간이과세제도 관련 세법 개정내용

내 용	종 전	현 행	시행 (법령)
간이과세 기준금액	·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 직전연도 공급대가 **8,000만 원 미만**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미만)	'21.1.1 (§61①)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	· 해당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3,000만원 미만	· 해당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미만**	'21.1.1 (§69①)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 영수증 발급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함)	· (원칙) **세금계산서 발급** · (예외) 영수증 발급(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21.7.1 (§36①)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 (신설)	· 1역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달하는 해의 **다음 해 7.1.부터 1년간** · 신규 개업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최초로 사업 개시한 해의 다음 해 6.30.까지**	'21.7.1 (§36의2)
신고	· 과세기간(1.1. ~ 12.31.) 다음해 1.25.까지 신고(연 1회)	· (추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 **예정부과기간 신고의무**	'21.7.1 (§66③)
세액계산구조 (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 (공급대가×업종별부가율*×10%) - (매입세액×업종별부가율) - 기타공제세액 + 가산세 * 업종별부가율 : 5~30% 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5% 2. 소매,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0% 3. 농임어업 제조, 숙박, 운수, 정보통신업 20% 4. 건설, 부동산임대업, 그 밖의 서비스업 30%	· (공급대가×업종별부가율×10%) - **(매입금액(공급대가)×0.5%)** - 기타공제세액 + 가산세 * **업종별부가율 : 15~40% ('21.7.1.이후)** 1. 소매,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5% 2. 농·임·어업, 제조,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3. 숙박 25% 4. 건설,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제외), 정보통신업, 그 밖의 서비스업 30% 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촬영업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40%	'21.7.1 (§63)
의제 매입세액 공제	·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적용 배제**)	'21.7.1 (§65)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 간이과세자(음식·숙박업) 2.0%(~'21.12.31. 2.6%) · 기타사업자 1.0%(~'21.12.31. 1.3%)	· **1.0% (~'21.12.31. 1.3%)**	'21.7.1 (§46①)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 (신설)	· (일반과세자 준용) · (미수취가산세 추가) **공급대가 × 0.5%**	'21.7.1 (§46③)
	· 경정시 공제받은 세금계산서 등 가산세 : 공급가액의 1%	· 경정시 공제받은 세금계산서등 가산세 : **공급가액의 0.5%**	'21.7.1 (§68의2②)

참고 4 -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 항목 및 일정

No	구분	제공 항목(총29개)	제공일정
1	매출	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별 명세 포함) 매출 합계	22.7.13.
2		신용카드 매출	22.7.12.
3		판매 · 결제대행자료	22.7.17.
4		현금영수증 매출	22.7.1.
5		내국신용장 · 구매확인서 전자발급금액	22.7.15.
6		수출실적 내역 (수출신고번호, 선적일, 수출액, 환율)	22.7.11.
7	매입	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별 명세 포함) 매입 합계	22.7.13.
8		수출 중소법인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세액	22.7.14.
9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22.7.12.
10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매입	22.7.1.
11		현금영수증 매입	22.7.1.
12		면세농산물 등 매입가액(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22.7.14.
13	공제	직전기 재고매입세액	22.7.1.
14		재고납부세액	22.7.1.
15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기공제세액	22.7.1.
16		일반과세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22.7.1.
17		일반과세자 예정고지세액	22.7.1.
18		간이과세자 예정부과세액	22.7.1.
19		간이과세자 예정신고세액	22.7.1.
20		철스크랩 등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	22.7.15.
21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상 계산서 금액	22.7.14.
22		신용카드사를 통한 대리납부 관련 세액공제금액	22.7.11.
23	기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직전기 임차인 명세	22.7.1.
24		수정신고·경정청구시 당초 부가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	신고마감후
25		전자계산서 매출 합계, 거래처별 명세	22.7.14.
26		전자계산서 매입 합계, 거래처별 명세	22.7.14.
27		국고입금 예정세액 정보(세무대리인)	22.7.15.
28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급, 수취, 전송 관련 가산세 내역	22.7.15.
29		음식·숙박업 직전기 사업장현황명세서	22.7.1.

참고 5 - 신고내용확인 추징 주요 사례

사례 1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소송비용을 사업장 관련 매입세액으로 잘못 신고하여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례

[분석 내용]

○ 제조업을 운영하는 법인사업자 A는 임원의 형사소송비용을 대납하면서 법무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 신고함

○ 임원의 개인적 소송비용을 대납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사업과 관련없는 비용으로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임에도 공제 대상으로 잘못 신고하여 분석대상자로 선정함

[조치 결과]

○ 부가가치세 신고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소송대리자료를 기반으로 빅데이터 분석한 결과,

– 소송당사자와 세금계산서 수취자가 서로 상이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사업과 관련없는 형사사건임이 확인되어 사업자 A에게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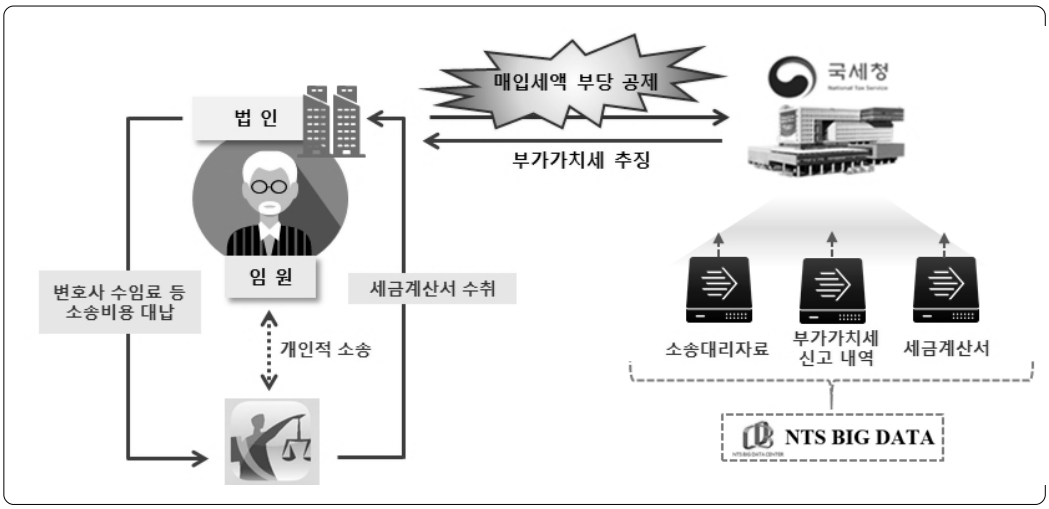

사례 2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전문서비스 용역을 제공하면서 면세 상호주의 고려 없이 무조건 영세율 매출로 신고한 사례

[분석 내용]

○ 경영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B는 국내 사업장이 없는 헝가리 소재 외국법인에게 경영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면서 외화를 획득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영세율 매출로 신고함

○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경영컨설팅 등 전문서비스 용역을 제공하면서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상대방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등에 대해 동일하게 면세(면세 상호주의)*를 적용해야함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 사업자 B는 외국법인이 소재한 헝가리가 면세 상호주의 국가가 아님에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오인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매출로 신고하지 않아 분석대상자로 선정함

[조치 결과]

○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외환수취내역을 분석한 결과, 경영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면서 면세 상호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국가로부터 외환을 수취한 것이 확인되어 사업자 B에게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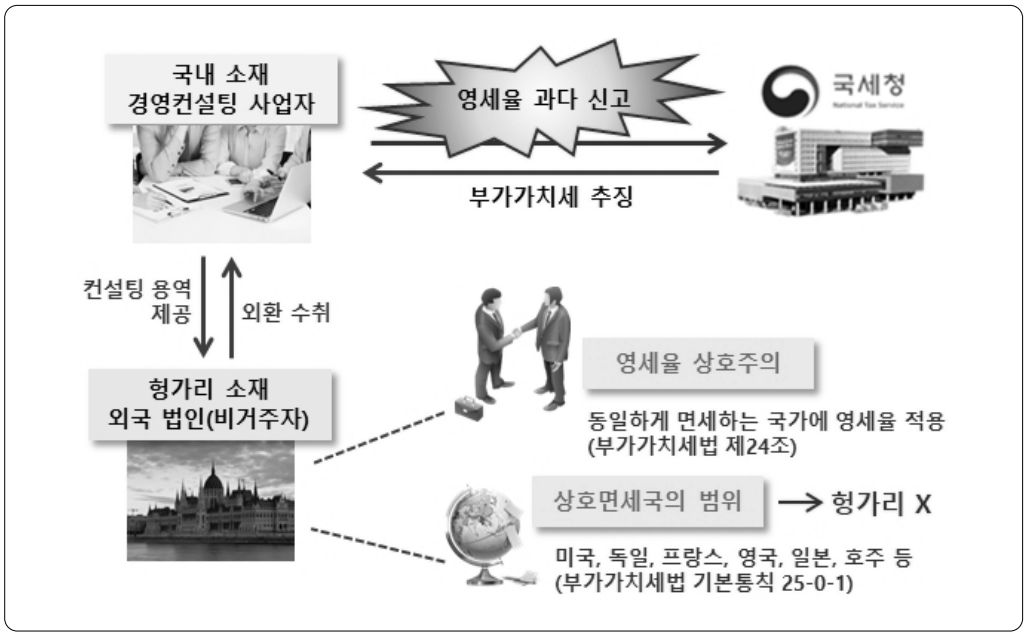

사례 3	낚시어선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낚시인들로부터 현금으로 승선비를 지급받으면서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를 누락한 사례

[분석 내용]

○ 낚시어선을 운영하는 선주 C는 바다낚시 동호회 회원들에게 단체할인 명목으로 승선비를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개인 낚시인들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하면서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음

○ 어선에 승객들을 승선시켜 가까운 연안해역 등에서 바다낚시를 할 수 있게 어선 운항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매출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여 분석대상자로 선정함

[조치 결과]

○ 해양수산부로부터 수집한 낚시어선업 신고자료, 각 지역 해양경찰서에서 제출받은 어선별 승선인원 및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 낚시어선 운영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현금 매출 신고를 누락하는 등 세금탈루 혐의가 확인되어 선주 C에게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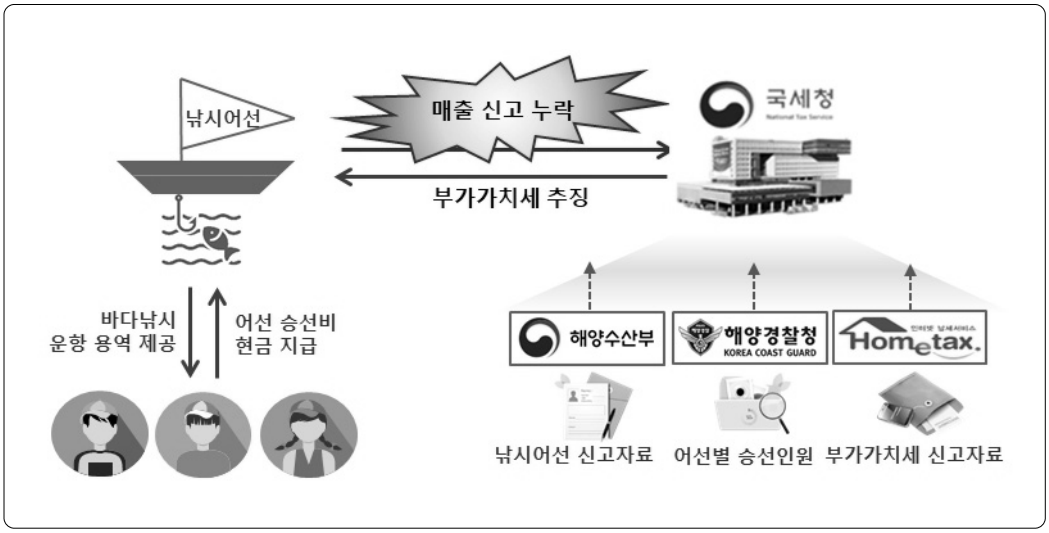

사례 4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비사업자에게 할인을 명목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하여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를 누락한 사례

[분석 내용]

○ 인테리어 공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D는 인테리어 수요가 많은 신축 대단지 아파트 입주민(비사업자)을 대상으로 공사비용 할인을 제시하면서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음

○ 아파트 내부 구조 변경, 실내 장식, 도배 등 인테리어 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매출 신고를 하여야 하나 이를 누락하여 분석대상자로 선정함

[조치 결과]

○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으로부터 수집한 동·호수별 승강기 사용료 자료, 사용료 지급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공사 의뢰 입주민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등을 연계 분석한 결과,

– 인테리어 공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발행 내역이 전무하고, 비사업자 대상 세금계산서 발행 사실도 없어 매출 신고 누락으로 보아 사업자 D에게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함

* 소득세법시행령 제210조의3 제11항 별표 3의3,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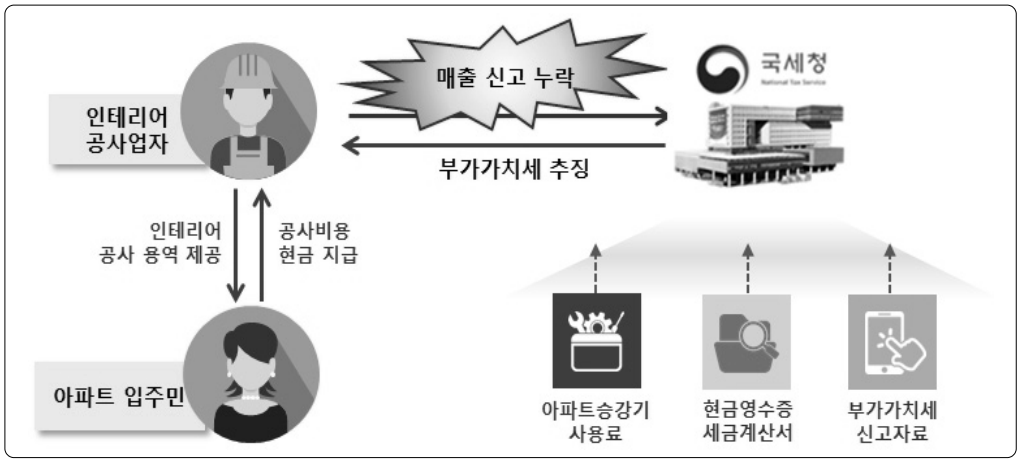

퇴직소득 원천징수

– 국세청, 2022. 7

1 퇴직급여제도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로 구분하며, 퇴직연금제도에는 확정급여 형퇴직연금제도(DB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가 있음

구 분		내 용
퇴직금제도		• 근로자 퇴직시 회사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설정하고 사내보유현금으로 지급
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DB형)(Defined Benefit Plan)	•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 • 사용자는 매년 기준책임 준비금의 80% 이상을 금융회사에 예치 • 급여수준은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 하는 금액 이상 • 급여의 지급은 근로자가 지정한 IRP계정으로 이전
	확정기여형(DC형)(Defined Contribution Plan)	• 사용자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 * 사용자는 DC형 계좌에 부담금을 지급함으로써 퇴직금을 정산하고 종업원은 자기책임 하에 퇴직자산 운용 •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근로자의 DC계정에 납입(근로자 추가 납입가능) • 급여의 지급은 근로자가 지정한 IRP계정으로 이전
	개인형퇴직연금(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plan)	• 근로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 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제도 * 근로자 부담으로 연간 1천800만원 이내의 금액을 IRP계정 부담금으로 납입 가능

2 퇴직소득의 범위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지연지급 이자 포함)
-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금(2016.1.1.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
- 종교관련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 일시금은 과세기준일(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은 일시금으로 함

※ 재직기간, 복무기간 또는 가입기간을 합산한 경우에는 재임용일 또는 재가입일을 과세기준일로 함

사례

1. 甲은 2000.1.1.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2020.12.31.까지 15백만원(2002.1.1. 이후 13백만원)을 납입하였으며, 2021.1.1. 반환일시금으로 2천만원을 수령하였다. 반환일시금 이자 5백만원 중 2002.1.1. 이후 납입분에 대한 이자는 4백만원이다. 과세기준금액은 얼마인가?
   ☞ Min(과세기준일 이후 납입금 및 이자, 실제 수령한 일시금 - 과세기준일 이전 납입금)
   = Min(17,000,000원, 20,000,000원-2,000,000원) = 17,000,000원

2. 丙은 1998.1.1. 군인연금에 가입하여 2018.12.31.까지 4천만원을 납입하였으며, 2021.1.1. 일시금으로 6천만원을 수령하였다. 과세기준금액은 얼마인가?
   ☞ 과세기준금액
   = 해당 과세기간 일시금 수령액 × 과세기준일(2002.1.1.) 이후 기여금납입월수 / 총 기여금 납입월수
   = 60,000,000원 × 216 / 264 = 49,090,090원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 현실적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나 임원의 경우에는 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봄

◉ 현실적인 퇴직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받지 않은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않고, 현실적인 퇴직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퇴직금 중간지급 사유에 해당하여 지급받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봄

3)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금(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노란우산, '16년 이후 시행)

◉ 폐업 등 사유*가 발생하여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퇴직소득으로 함

* 소기업 · 소상공인 폐업 또는 해산, 공제 가입자 사망, 법인 대표자 지위로 공제에 가입한 자가 그 법인의 대표자 지위 상실, 만 60세 이상으로 공제부금 납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자가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때

○ 이 경우 근속연수는 공제부금 납입월수를 12로 나누어 계산한 연수(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봄)로 함

퇴직소득 = 공제금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 폐업 등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환급금에서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타소 득으로 과세함

※ 2016.1.1. 전 가입분은 종전 규정(운용수익에 대해 이자소득 과세)에 따르나 2016.1.1. 전에 중소기업중앙회에 개정규정 적용을 신청한 경우 소득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을 합산, 퇴직소득으로 과세함

4) 그 밖에 퇴직소득으로 보는 소득

◉ 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을 지급하는 자가 퇴직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

◉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 2013. 2. 15.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종교관련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3 세법상 퇴직판정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다만, 현실적인 퇴직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받지 않는 경우 퇴직으로 보지 않고, 현실적인 퇴직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퇴직금중간지급 사유에 해당하여 지급받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봄

1) 소득세법에 따른 퇴직판정의 특례

현실적인 퇴직사유를 열거하고 있지 않으며 퇴직판정의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를 두고 있음

◉ 현실적인 퇴직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퇴직금 미수령 시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경우
- ○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 ○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또는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 ○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2015. 2. 3. 이후 전출하는 경우부터 적용)
- ○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 ○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 계속근로기간 중 미리 퇴직금 수령하여 퇴직으로 보는 경우
-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는 아래의 사유로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3조 1항)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 근로자가 중간정산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 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 나이 등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

•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30호(2015.7.6.)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지진(지진해일 포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법인의 임원이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조건으로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2015년까지만 적용)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2) 법인세법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사유

◉ 현실적인 퇴직사유를 열거하고 있으며 현실적인 퇴직으로 지급한 금액은 손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2항) 함
○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
○ 임원 또는 사용인이 법인의 조직변경, 합병, 분할 또는 사업 양도에 의하여 퇴직
○ 근퇴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 임원이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퇴직금 정산(2015년까지만 적용)
○ 정관 등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

4 퇴직소득 수입시기

◉ (원칙) 퇴직한 날
◉ (예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받는 날로 함
○ 국민연금법에 따른 일시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다만, 위 금액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최초로 지급받는 날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서 발생하는 소득
○ 퇴직판정의 특례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지급 하는 경우
○ 舊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라 과세이연된 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사례

• 퇴직일 2020.12.31., 퇴직소득 지급일 2021.1.10.인 경우 퇴직소득 수입시기 : 2020년 귀속에 해당
• 중간정산 시점 2020.12.31.,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일 2021.1.10.인 경우 퇴직소득 수입시기 : 2021년 귀속에 해당

사례

중간정산퇴직금을 분할지급하는 경우 수입시기 등(소득세 집행기준 22-50-3)

- 중간정산퇴직금을 분할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 날(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 받는 날)'임
- 1차 지급분에 대하여 원천징수하고, 2차 이후 지급분을 1차 지급일과 동일 연도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급 시 원천징수하며, 1차 지급일과 동일한 연도에 미지급한 경우에는 퇴직소득지급시기 의제 적용하여 원천징수 함

재정산 퇴직금을 다음 해에 추가 지급하는 경우 수입시기 (원천세과-766, 2009.09.18.)

- 성과금이 확정됨에 따라 재산정한 퇴직금을 퇴직한 다음 해에 추가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는 실제 퇴직한 날을 귀속연도로 하고 퇴직시 지급된 퇴직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지급하는 때에 함

5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현행 규정 방식

(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된 것)

퇴직소득금액 (퇴직급여액 - 비과세 소득)

↓

퇴직소득공제(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

퇴직소득공제(환산급여공제)

↓

퇴직소득과세표준

↓

퇴직소득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율) ÷ 12 × 근속연수

↓

기납부(과세이연)세액

↓

차감원천징수세액

* 2020년 이후 퇴직하는 분부터 적용

사례

홍길동씨는 ㈜국세에 2002.01.01 입사하였고 2021.03.28 퇴사하였음.
홍길동씨의 근속연수는 20년이며 최종 퇴사 시 지급받은 퇴직급여는 1억원임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	계산 사례 (근속연수 20년, 퇴직급여 1억원)

① 퇴직급여액

비과세소득(장해보상금 등)

② 퇴직소득금액

③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	퇴직소득공제
5년 이하	근속연수×30만원
10년 이하	150만원+(근속연수- 5)× 50만원
20년 이하	400만원+(근속연수-10)× 80만원
20년 초과	1,200만원+(근속연수-20)×120만원

④ 환산급여

(퇴직소득금액-퇴직소득공제)×12÷근속연수

⑤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	환산급여공제
800만원 이하	전액 공제
7,000만원 이하	800만원+(환산급여- 800만원)×60%
10,000만원 이하	4,520만원+(환산급여- 7,000만원)×55%
30,000만원 이하	6,170만원+(환산급여-10,000만원)×45%
30,000만원 초과	15,170만원+(환산급여-30,000만원)×35%

⑥ 과세표준

기본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1,080,000원
8,800만원 이하	24%	5,220,000원
15,000만원 이하	35%	14,900,000원
30,000만원 이하	38%	19,400,000원
50,000만원 이하	40%	25,400,000원
100,000만원 이하	42%	35,400,000원
100,000만원 초과	45%	65,400,000원

⑦ 환산산출세액

(과세표준×기본세율) - 누진공제액

⑧ 산출세액

환산산출세액 ÷12×근속연수

① 퇴직급여액 100,000천원

② 퇴직소득금액 100,000천원

③ 퇴직소득공제 12,000천원
= 4,000천원 + (20년－10)× 800천원

④ 환산급여 52,800천원
= (100,000천원－12,000천원)×12÷20년

⑤ 환산급여공제 34,880천원
= 8,000천원 + (52,800천원－8,000천원)×60%

⑥ 과세표준 17,920천원
= 52,800천원－34,880천원

⑦ 환산산출세액 1,608천원
= (17,920천원×15%)－1,080천원

⑧ 산출세액 2,680천원
= 1,608천원÷12×20년

종전 규정 방식과 개정 규정 방식 세액계산 구조 비교

종전 규정 방식(2015년 이전 퇴직)

- 퇴직급여액
-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액 - 비과세 소득
- 퇴직소득공제
  - 정률공제(퇴직소득금액 × 40%)
  -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	공제금액
5년 이하	근속연수 × 30만원
10년 이하	150만원 + (근속연수 - 5) × 50만원
20년 이하	400만원 + (근속연수 - 10) × 80만원
20년 초과	1,200만원 + (근속연수 - 20) × 120만원

- 퇴직소득과세표준 = 퇴직소득금액 - 퇴직소득공제
- 퇴직소득산출세액(① = ㉮ + ㉯)

  * 과세표준은 근속연수로 안분

  ㉮ 2012년 이전분
  = (과세표준 ÷ 근속연수) × 세율 × 근속연수

  ㉯ 2013년 이후분 = (과세표준 ÷ 근속연수) × 5 × 세율 ÷ 5 × 근속연수

<기본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1,080,000원
8,800만원 이하	24%	5,220,000원
15,000만원 이하	35%	14,900,000원
30,000만원 이하	38%	19,400,000원
50,000만원 이하	40%	25,400,000원
100,000만원 이하	42%	35,400,000원
100,000만원 초과	45%	65,400,000원

개정 규정 방식(2016년 이후 퇴직)

- 퇴직급여액
-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액 - 비과세 소득
-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	공제금액
5년 이하	근속연수 × 30만원
10년 이하	150만원 + (근속연수 - 5) × 50만원
20년 이하	400만원 + (근속연수 - 10) × 80만원
20년 초과	1,200만원 + (근속연수 - 20) × 120만원

* 정률공제(40%) 폐지

- 환산급여(㉰) = (㉮ - ㉯) ÷ 근속연수 × 12
- 퇴직소득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	공제금액
8백만원 이하	전액 공제
7천만원 이하	8백만원+(㉰-8백만원)×60%
1억원 이하	4천520만원+(㉰-7천만원)×55%
3억원 이하	6천170만원+(㉰-1억원)×45%
3억원 초과	1억5천170만원+(㉰-3억원)×35%

- 퇴직소득산출세액(②)
  = (과세표준 × 세율*) ÷ 12 × 근속연수
- 경과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산출세액
  = (① × 적용비용) + (② × 적용비율)

① 종전규정(2015년) 산출세액

② 개정규정(2016년) 산출세액

<연도별 산출세액 적용비율>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종전방식 산출세액	80%	60%	40%	20%
개정방식 산출세액	20%	40%	60%	80%

◉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 안내

○ 국세청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서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제공(<접근경로> 하단부 자료실 → 검색창에 "퇴직" 입력 → 2021년 귀속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2021.01.04.))

6 퇴직소득 세액정산

◉ (정산 대상)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다음의 퇴직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은 경우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 ○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 ○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 근로계약은 근로제공을 위해 사용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을 말하고, 이 경우 퇴직판정의 특례(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1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결하는 계약을 포함함(2016.2.17개정)

- ○ (정산 방법) 정산하는 퇴직소득세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
- ○ (근속연수)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

사례

입사일 2016.1.1., 중간정산지급일 2020.12.31., 퇴사일 2021.3.31.

☞ 중간정산 지급시 근속연수 : 60개월(2016.1.1.~ 2020.12.31., 5년)
최종 퇴직 시 근속연수 : 63개월(2016.1.1.~2021.3.31., 6년)
정산 근속연수 : 60개월 + 63개월 - 중복월수 60개월 = 63개월(6년)

세액정산 가능여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08, 2016.5.17.

☞ 근로자가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면서 퇴직금을 지급받고 이후 그 전입된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퇴직소득세액을 정산 받을 수 있는 것임

7 퇴직소득세의 이연

1) 이연퇴직소득(소득세법 제146조 2항)

◉ 거주자의 퇴직소득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을 지급하더라도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이 경우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 해당 거주자가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 신청 가능

2) 이연퇴직소득세 계산(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2)

◉ 이연퇴직소득세액의 계산

이연퇴직소득세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이연퇴직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 퇴직소득금액은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함

$$\text{이연퇴직소득세} = \text{퇴직소득 산출세액} \times \frac{\text{연금계좌로 지급·이체된 금액}}{\text{퇴직소득금액}}$$

◉ 이연퇴직소득세 원천징수(연금계좌취급자)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연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text{원천징수할 이연퇴직소득세} = \text{연금외수령 당시 이연퇴직소득세} \times \frac{\text{연금외수령한 이연퇴직소득}}{\text{연금외수령 당시 이연퇴직소득}}$$

3) 연금계좌취급자 통보(소득세법시행령 제202조의3)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거나 환급한 경우 퇴직소득 지급 명세서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즉시 통보

통보시 주의할 사항
원천징수의무자가 연금계좌취급자에게 통보하는 퇴직소득 지급명세서에 소득자의 이연퇴직 소득세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해당 금액의 1%를 가산세로 징수(제출기한 경과 3개월 이내 제출시 0.5%)

4) 퇴직소득세 환급(소득세법시행령 제202조의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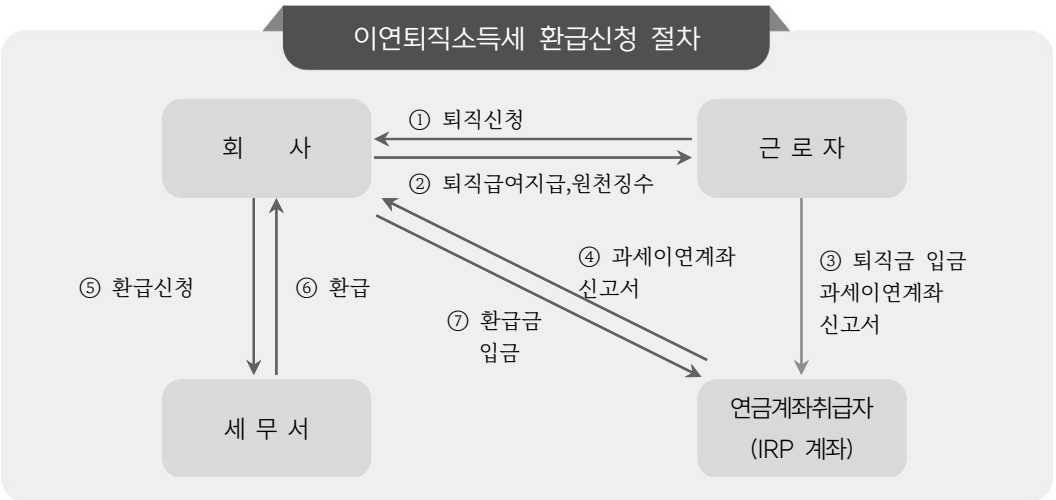

통보시 주의할 사항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69, 2020.4.30.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이연퇴직소득이 있으며, 해당 이연퇴직소득이 「소득세법」 제148조 제1항 본문의 각호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경정청구 환급세액 계산 시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기납부세액에는 이연퇴직소득세는 제외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연퇴직소득세액을 포함한 퇴직소득세액 정산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연퇴직소득세액이 경정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경정된 이연퇴직소득세액을 정산 대상이 되는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연금계좌 취급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8 퇴직소득 원천징수 방법

1) 원천징수의무자(소득세법 제127조, 제128조)

◉ 국내에서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

○ 적립금과 운용수익 귀속자가 사용자(회사)이고 퇴직연금사업자는 회사를 대신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할 뿐이므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회사가 원천징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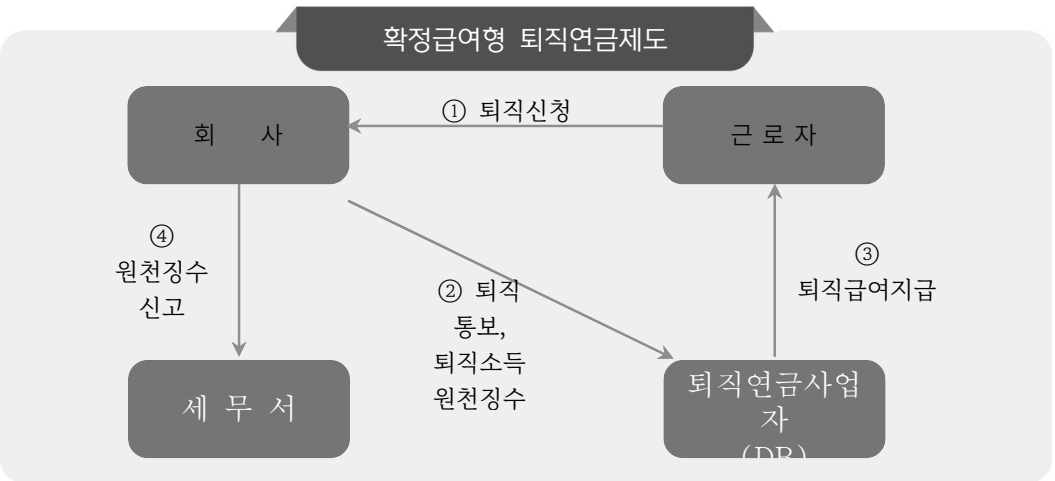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

○ 회사의 퇴직금 적립과 동시에 퇴직금 지급의무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임되고,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다가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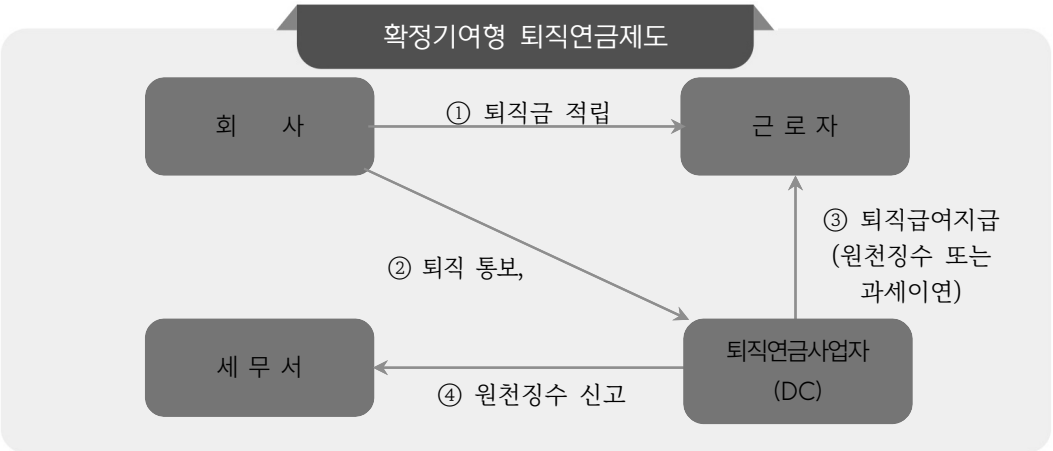

2)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퇴직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원천징수영수증을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에게 발급

○ 다만, 원천징수시기 이연(소득세법 제146 2항)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유를 함께 적어 발급

3)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소득세법 제147조)

◉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

◉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

9 임원 퇴직소득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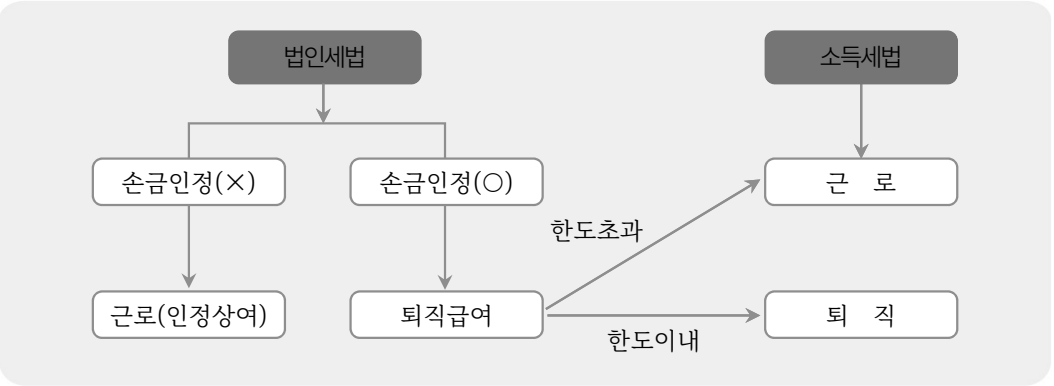

◉ 법인세법의 임원 퇴직급여 손금산입 여부(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을 손금 산입

※ 이 경우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함

○ 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손금 산입

임원의 퇴직급여액 한도 = 1년간 총급여액* × 1/10 × 근속연수**

* 총급여액 :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금액(비과세소득 제외)으로 하되, 법인세법시행령 제43

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

** 근속연수 : 역년에 의해 계산하며 1년 미만은 월수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함. 이 경우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음

◉ 소득세법상 임원의 퇴직소득금액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소득금액이 다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봄(소득세법 제22조 3항)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근무기간이 3년미만인 경우 해당 근무기간)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 $\times \frac{1}{10} \times \frac{\text{2012년 1월 1일 이후의 근무기간(月)}}{12} \times 3(2^{*})$

* 2020.1.1. 이후 퇴직하여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

※ 근무기간 : 개월 수로 계산(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 1개월로 봄)

총 급 여 :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비과세 소득은 제외)을 합산

○ 임원의 퇴직소득금액 한도 계산 시 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과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빼고 계산

○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이란 퇴직소득금액에 2011년 12월 31일 이전 근무기간을 전체 근무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함 다만, 2011년 12월 31일에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따른 임원 퇴직급여 지급규정이 있는 법인의 임원이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한다고 가정할 때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을 적용하기로 선택 가능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7월 8일(금)	7월 11일(월)	7월 12일(화)	7월 13일(수)	7월 14일(목)
미 달 러 (USD)	1302.70	1299.30	1300.60	1312.90	1305.90
일 본 엔 (JPY)	958.11	954.00	947.10	959.06	949.99
영 국 파 운 드 (GBP)	1565.91	1562.86	1547.39	1559.73	1551.28
캐 나 다 달 러 (CAD)	1004.20	1003.48	1000.54	1007.87	1005.62
홍 콩 달 러 (HKD)	166.00	165.54	165.69	167.25	166.37
위 안 화 (CNH)	194.25	193.94	194.05	194.86	193.79
유 로 화 (EUR)	1324.00	1321.91	1306.52	1316.71	1312.63
호 주 달 러 (AUD)	890.98	890.48	876.41	886.67	880.96
싱 가 폴 달 러 (SGD)	930.03	929.03	925.36	932.56	928.81
말레이시아링기트 (MYR)	294.20	293.49	293.79	295.90	294.32

퇴직연금제도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도입됩니다

– 고용노동부, 2022. 7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21.12.9)됨에 따라 정부는 하위법령 및 세부추진계획 마련 등 제도 시행을 준비해왔으며,

○ 7.5일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주요 내용을 규정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요건, 가입자에 대한 정보제공 절차 및 방법,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 및 승인취소, 공시 등 관리에 관한 사항 등

** 시행규칙(심의위원회 구성 등), 퇴직연금감독규정(운용규제)도 개정절차 진행하여 7.12 시행

□ 이에 따라 7월12일부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제도)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제도)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도입된다.

○ 사전지정운용제도는 흔히 디폴트옵션이라고 불리는 제도로서,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 퇴직연금 운영경험이 풍부한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가입자의 적절한 선택을 유도하여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정부의 사회적 책무라는 인식하에,

– 이미 오래전부터 퇴직연금제도에 디폴트옵션을 도입*하여 운영해 왔으며, 연 평균 6~8%의 안정적 수익률 성과를 내고 있다.

* 미국 2006년, 영국 2012년, 호주 2013년, 일본 2018년에 도입

□ 하위법령 개정으로 구체화 된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전지정운용방법 승인 §21조의2①②④

▸ (절차)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 소속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와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을 거쳐 사용자와 가입자에게 제시할 사전지정운용방법 마련

▸ (심의委) 위원장: 노동부 차관, 정부위원: 노동부·금융위 퇴직연금 담당 고위공무원
전문가: 퇴직연금 관련 분야 3년 이상 경력 등을 갖춘 전문가, 임기 2년(연임 가능)

* 기초 심의 및 본심의 준비 등 위해 실무위원회 운영(퇴직연금복지과장, 금감원, 전문가 등)

▶ (상품 유형) ① 원리금보장상품, ② 펀드상품(법 제21조의2제1항제2호각목 유형),
③ ①유형 단독, ②유형 단독, ①·②유형을 모두 혼합한 포트폴리오형 상품 가능

▶ (승인 요건) 원리금보장상품은 금리, 만기, 예금자 보호, 상시 가입 가능 여부,
펀드·포트폴리오 상품은 자산 배분의 적절성, 손실가능성, 수수료 등 위주 심사
* 승인 세부요건은 시행령, 고시 등으로 규정

○ 먼저,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용자와 가입자에게 제시할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 소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심의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전문성을 갖춘 퇴직연금 관련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내면서도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양질의 상품만을 승인할 예정이다.

○ 승인 가능한 상품의 유형은 원리금보장상품, 법령상 허용되는 유형의 펀드상품(법 제21조의2제1항제2호각목), 포트폴리오 유형 상품이다.

– 예금 · 이율보증보험계약(GIC)등 원리금보장상품은 금리 · 만기의 적절성, 예금자 보호 한도, 상시가입 가능 여부 위주로 심의하게 되며,

– 펀드 · 포트폴리오 유형은 자산 배분의 적절성, 손실가능성, 수수료 등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게 된다.

○ 정부는 제도 시행 후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신속하게 심의 등 승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10월 中에는 첫 번째 심의위원회를 거쳐 승인된 상품이 공시될 예정이다.

〈심의 절차〉

사전협의 ➡ 신청 ➡ 기초심의 (실무위원회) ➡ 본심의 (심의위원회) ➡ 심의결과 통지

2 사전지정운용방법 선정 §21조의2③⑤, §21조의3①②

▶ (제시)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승인 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사용자에게 제시 > 사용자 선택
* 위험등급, 손실가능성, 가입자 보호장치 등 상품의 주요정보를 서면 혹은 전자문서로 안내

▶ (규약) 사용자는 사전지정운용제도에 관한 사항(정의,절차,방법 등)과
선택한 사전지정운용방법을 근로자대표 동의를 거쳐 퇴직연금 규약에 반영

▶ (선정) 근로자는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규약에 반영된 사전지정운용방법 관련 정보를 제공* 받아 그 중 하나의 상품을 본인의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
* 사용자 제시방법과 동일하게 손실 가능성 등 상품 주요 정보를 서면 혹은 전자문서로 안내

○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승인 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대한 주요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시한다.

- 사용자는 제시 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 중 사업장에 설정할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택하여 제도에 관한 사항과 함께 퇴직연금규약에 반영해야 한다. 이때, 근로자대표 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 근로자는 규약에 반영된 상품에 대한 주요 정보를 사업자로부터 제공 받아 그 중 본인의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하게 된다.

3 사전지정운용방법 적용	§21조의3③④⑤, §21조의4①②

▸ (요건) 근로자가 신규가입 혹은 기존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6주간의 대기기간을 거친 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

* 기존 상품의 만기가 도래한 후 4주간 운용지시 없을 경우, "2주 이내에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해당 적립금이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됨"을 통지하고, 통지후 2주가 경과하면 사전지정운용방법 적용

** 신규가입 후 운용지시 없는 경우에는 4주 유예 없이 통지 후 2주 대기기간만 적용

▸ (Opt-In)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지 않은 근로자가 본인의 적립금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하기를 원할 경우 바로 운용 가능

▸ (Opt-Out)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다른 상품으로 운용지시 가능

○ 사전지정운용방법은 근로자가 신규로 가입했거나 기존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운용지시를 하지 않거나,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본인의 적립금을 바로 운용(OPT-IN)하기를 원할 경우 적용된다.

- 근로자가 기존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4주간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2주 이내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해당 적립금이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됨" 을 통지받게 되며,
- 통지 후 2주 이내에도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적립금이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된다.

* 신규 가입 후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4주 대기 없이 바로 통지를 받게 되며, 통지 후 2주 이내에 운용지시 없을 경우 적립금이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

-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지 않은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본인의 적립금을 운용하는 것을 선택(OPT-IN)할 수 있다.

○ 또한,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 중에도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원하는 다른 방법으로 운용지시가 가능(OPT-OUT)하다.

○ 아울러,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기존 위험자산한도(70%)규제에도 불구하고 사전지정운용방법은 적립금의 100%까지 운용이 가능하다.

4 사전지정운용방법 관리	§21조의3⑥⑦

▶ (변경) 상품 변경 사유 발생 시 고용노동부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 변경 가능
▶ (승인 취소) 승인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등 시행령으로 정한 취소 사유 발생 시 심의위원회 통해 승인 취소여부 결정 > 승인 취소 시 가입자 통지 및 다른 운용방법 안내, 같은 위험등급의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 이전 등 보호조치 시행
▶ (공시) 가입자의 선택권 보장과 퇴직연금사업자 간 경쟁 제고를 위하여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이 운용현황·수익률 비교 정보 등을 홈페이지에 공시
▶ (상품 관리) 3년에 1회 이상 정기평가 실시 > 승인 지속여부 결정

○ 퇴직연금사업자가 승인 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고용노동부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으며,
– 변경 승인을 받았을 경우 근로자에게 변경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이때, 변경된 내용으로 적립금이 운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가입자는 다른 상품으로 운용지시가 가능하다.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았거나 사후적으로 승인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심의위원회를 통해 승인 취소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 승인 취소 시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에게 취소사항을 즉시 통지해야 하며, 다른 금융상품 안내 및 같은 위험등급의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의 적립금 이전 등 가입자 보호조치를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제도)에 도입되는 사전지정운용제도에 관한 사항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제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다만,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에 대한 절차가 없으므로, 퇴직연금사업자가 승인받은 상품을 가입자에게 바로 제공하고 가입자는 그 중 본인의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하면 된다. 이외 사항은 동일하다.
○ 정부는 이외에도 가입자의 선택권 보장과 사업자간 경쟁 제고 등을 위해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운용현황 및 수익률 등을 분기별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탈을 통해 공시할 예정이며,
– 사전지정운용방법을 3년에 1회 이상 정기평가하여 승인 지속여부를 심의하는 등 상품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그간 퇴직연금제도는 낮은 수익률 문제 등으로 근로자의 노후준비에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 "지난 4월 도입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와 적립금운용위원회, 그리고 7월에 도입되는 사전지정운용제도를 빠르게 현장에 안착시켜 수익률 제고뿐 아니라 퇴직연금제도가 근로자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좋은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